의 안 번 호

1485

[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11. 8.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30.(금)

2. 제안이유

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상위법령에 따라 위촉하 도록 규정하고, 회의 기본시간 현실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형평성 을 구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 반영(안 제6조제1항)

나. 위원 참석수당 기준액 개정(안 제13조제2항)

○ 현 행 : 초과기준(기본 **3**시간 초과시)

O 변 경 : 초과기준(기본 **2**시간 초과시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4. 근거법규: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, 회의 참석수당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